

제343회 임시회
2015.10.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1 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우양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4일

(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우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음

○ 이에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함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신선기)

- ‘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15년” 을 “2020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2조(생 략)	제1조 ~ 제2조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생 략)	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</u> 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 장할 수 있다.	② ----- <u>2020년</u> -----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[2015-07-24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